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은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05

발의연월일: 2024. 9. 9.

발 의 자: 박은정·조 국·김준형

이해민 · 강경숙 · 김재원

김선민 · 정춘생 · 서왕진

신장식 • 황운하 • 차규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에는 게임 사이트, 메타버스 등에서 여성캐릭터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, 실제 유저가 여성임을 확인한 후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적 모욕, 여성 혐오 욕설을 하거나, 스토킹으로 발전하는 등 온라인상의 성적 폭력 및 괴롭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해당 행위가 저속한 표현을 넘어 '음란물'의 정도를 충족해야하며,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는 '공연성'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성적 목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등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백이 발생함.

이에 기존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포섭되지 않는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침해행위나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 성범죄 특성

에 맞는 형사적 대응을 하고, 범죄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및 제74조제1항제2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7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(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,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 는 방식을 포함한다)을 하는 내용의 정보

제74조제1항에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언동(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,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)을 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	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		
등)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	등) ①		
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		
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			
여서는 아니 된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1의2.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		
	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		
	적 언동(사람의 인격을 표상		
	하는 캐릭터, 계정 등 디지털		
	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		
	<u>함한다)을 하는 내용의 정보</u>		
2. ~ 9. (생 략)	2. ~ 9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
제74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	제74조(벌칙) ①		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			
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			
하의 벌금에 처한다.			
1. • 2.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2의2.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		
	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성적		
	언동(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		
	캐릭터, 계정 등 디지털 데이		

	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
	<u>다)을 한 자</u>
3. ~ 7.(생 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